

의안번호	제 177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12월 일 (제 266 회)

**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·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7년 11월 26일

##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 . 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제안이유

- 급식관련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,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(학생이 전학·퇴학·졸업인 경우)에 휴학을 추가함(안 제7조)
- 나.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함(안 제13조제5항)
- 다.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
(안 제17조제1항)

###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췌

##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동조제1호중 "학생이 전학·졸업·퇴학"을 "학생이 휴학·전학·졸업·퇴학"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중 "사고가 있을 때"를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"로 한다.

제13조중 "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"를 "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"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"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"를 "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퇴임등)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.</p> <p>1. 학부모위원의 <u>학생이 전학·졸업·퇴학</u>,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3 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 연 퇴임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~ ④(생략)</p> <p>⑤위원장은 <u>운영위원회</u>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</u>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⑥(생략)</p> <p>제13조(의사 등의 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 원장이 결정한다.</p> <p>제17조(소위원회의 설치)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 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<u>소위원회를</u> 둘 수 있다. &lt;단서신설&gt;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의 퇴임등)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,</p> <p>1. -----<u>학생이 휴학·전학·</u> 졸업·퇴 학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</u>-----.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의사 등의 정족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u></p> <p>제17조(소위원회의 설치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</u> 여야 한다. <u>다만,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</u>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 한다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제34조 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## 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62조 (조례 등에의 위임)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학교급식법

제5조 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.

1.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
  2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
  3.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학교급식법 시행령

제2조 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[「학교급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]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학교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급식 운영방식, 급식대상, 급식횟수,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
2.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4.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
5.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
6.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
7.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)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, 영양·위생·식재료·작업·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(이하 "시·도교육청"이라 한다)의 부교육감(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)이 된다.

③위원은 시·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, 학교의 장, 학부모, 학교급식분야 전문가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, 시·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 (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